

경산중앙교회 정관 개정(안)

공동의회 설명자료

— 신·구 조문 대조표 및 개정 취지·내용·기대효과 —

기획위원회 (제3차 개정안, 2026. 6. 28. 6월 정기 당회 최종 의견 반영)

I. 정관 개정의 취지 및 필요성

본 교회 정관은 2003년 12월 제정된 이래 2007년(제1차), 2023년(제2차) 두 차례 개정을 거쳤으나, 그동안 교회의 성장과 변화된 환경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여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.

- 1. 교인에 관한 규정의 부재** — 현행 정관에는 교인의 정의·구분·권리·의무에 관한 장(章)이 없어, 교회 운영과 치리(治理)의 기준이 모호하였습니다.
- 2. 목적 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 근거의 부재** — 교회가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(비전센터 옥상 태양광 발전사업 등)을 별도 법인을 통해 수행하고자 할 때 이를 뒷받침할 정관상 근거가 없었습니다.
- 3. 조직·재정·감사 체계의 정비 필요** —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등의 조문을 정비하고, 직제·자격·용어의 표기를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4. 중요 의결 정족수의 명확화** — 정관 개정 및 교회 재산 처분·대표자 변경 등 중대 사항의 의결 정족수를 명확히 하여, 교회 재산을 보호하고 의사결정의 분쟁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.

이에 기획위원회는 총회(합동) 헌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위 사항을 반영한 개정(안)을 마련하여 **공동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** 합니다.

II. 주요 핵심 개정 내용

1. 제 4 조 「사역의 종류」 — 별도 법인 설립 근거 신설 (핵심)

- 제 8 호를 추가하여 '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'을 사역의 종류에 포함하였습니다.

- 제 2 항을 신설하여, 본 교회가 사역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회의 결의로 별도의 법인 등을 둘 수 있으며 법인 설립은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. → 태양광 발전사업 법인 설립의 직접적 근거가 됩니다.

2. 제 2 장 「교인」 전면 신설 (제 5 조~제 9 조)

- 교인의 정의와 구분(원입·학습·유아세례·세례교인), 의무, 권리, 이적과 퇴회, 권리의 제한·정지를 새로 규정하였습니다.
- 교인 장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조직·재정·선거·부칙 등 이하 모든 장·조의 번호가 순연(順延)됩니다.

3. 제 3 장 「조직과 부서」 (구 제 2 장)

- 공동의회 회원 자격을 '흠 없는 세례교인(입교인)'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.
- 당회장이 본 교회의 대표자가 됨을 명시하고(제 14 조), 제직회의 구성 범위를 재정의하였습니다.

4. 제 4 장 「재산 및 재정」 (구 제 3 장)

- 회계 감사의 주체를 '당회 감사위원회'로 변경하고, 감사 범위에 '운영'을 포함하였습니다(제 19 조).

5. 제 5 장 「선거 및 임면」 (구 제 4 장)

- 후보자 평가항목에 '교육(훈련)과정'을 추가하고 '시무집사'로 용어를 통일하였으며, 사면 요건('교회원의 과반수 이상')과 정족수 표기를 정비하였습니다.

6. 부칙 — 개정 요건 강화 및 정족수 명확화

- 정관 개정을 '당회 3 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발의하고, 공동의회 출석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'하도록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.
- 교회 재산 및 대표자 명의변경 등 중요 의결의 정족수를 '3 분의 2 이상'으로 명확히 정비하고, 제 3 차 개정(2026) 부칙을 추가하였습니다.

Ⅲ. 신·구 조문 대조표 (핵심 변경 요약)

※ 가독성을 위해 조문별 핵심 변경사항만 요약하였습니다. 전체 조문 전문은 별첨 개정(안) 원안을 따릅니다.

장·조문	현행	개정(안)	핵심 변경요지
제1장 제1~3조	명칭·소재지·목적 (현행 유지)	좌 동	변경 없음
제4조 사역	「제4조(사역)」 목적 달성을 위한 7개 사역 열거 (항 구분 없음) 법인 설립 근거 없음	「제4조(사역의 종류)」 ①항으로 정리, 제8호 신설 (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) ②항 신설: 당회 결의로 별도 법인 설립 가능, 법인설립은 공동의회 의 결을 거침	■ 제8호 추가 ■ ②항 신설 — 별도 법 인(태양광 발전사업 등) 설립의 정관적 근거 마련 [핵심]
제2장 교인 (신설) 제5~9조	(해당 조항 없음) 현행 정관에 교인에 관한 장·조 부재	「제2장 교인」 전면 신설 제5조 정의와 구분 (원입·학습·유아세례·세례교인) 제6조 의무 / 제7조 권리 제8조 이적·퇴회 / 제9조 권리 제한· 정지	■ 교인 장 전면 신설 ■ 이하 모든 장·조 번호 순연(順延)
제3장 조직과 부서 (구 제2장) 제10~16조	공동의회 자격: '흠 없는 입교인' 당회장 대표자 지위 명시 없음 제직회: '서리집사 이상'으로 구성	공동의회 자격: '흠 없는 세례교인(입 교인)' 제14조: '당회장은 본교회 대표자' 명시 제직회: 당회원·시무사역장로·시무집 사·권사로 구성, 당회 결의로 서리·무 임집사·무임권사에 회원권 부여 가 능	■ 공동의회 자격 명확화 ■ 당회장 대표권 명문화 ■ 제직회 구성 재정의
제4장 재산 및 재정 (구 제3장) 제17~19조	각 호 1.2. 표기 감사: '당회에서 임명된 감사'가 회계 사항 감사	①②항 체계로 정비 제19조: '당회 감사위원회'가 회계 감사 및 운영에 관하여 감사	■ 감사 주체를 감사위원 회로 변경 ■ 감사 범위에 '운영' 포 함
제5장 선거 및 임면 (구 제4장) 제20~23조	후보 평가 5개 항목 '시무(안수)집사' 용어 사면 요건: '교회의 태반' 정족수 '2/3' 등 혼용 표기	후보 평가에 제6호 '교육(훈련)과정' 추가 '시무집사'로 용어 통일 사면 요건: '교회원의 과반수 이상' 으로 명확화 '3분의 2' 등 표기 통일·정비	■ 후보 평가항목 추가 ■ 용어·요건·표기 정비
부칙	제1조: 당회 2/3 동의 + 공동의회 과	제1조: 당회 3분의 2 이상 동의로 발	■ 정관 개정 요건 강화

장·조문	현행	개정(안)	핵심 변경요지
(→ 제6장 부칙 순연)	반수 찬성으로 개정 제4조: 재산·대표자 변경 의결정족수 '2/3' 표기	의 +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정 제4조: '3분의 2 이상' 출석·찬성으로 표기 정비 제3차 개정(2026) 부칙·당회원 명단 추가	■ 재산처분 의결정족수 명확화

■ 표시는 실질적 변경(신설·강화·명확화) 사항입니다.

IV. 기대효과

1. 목적 사업 추진의 적법성·안정성 확보 — 별도 법인 설립의 정관적 근거가 마련되어, 비전센터 옥상 태양광 발전사업 등 교회 목적 사업을 적법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.
2. 치리와 교회 운영의 객관적 기준 확립 — 교인의 지위·권리·의무가 명문화되어, 교회 운영과 치리에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이 마련됩니다.
3. 조직·재정·감사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— 감사위원회 등 조직 정비와 감사 범위 확대로, 교회 행정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·책임성이 높아집니다.
4. 교회 재산의 보호와 분쟁 예방 — 정관 개정·재산 처분 등 중요 의결의 정족수가 명확해져, 교회 재산을 보호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분쟁을 예방합니다.
5. 총회 헌법과의 정합성 제고 — 합동 총회 헌법 체계와 정합하도록 용어·표기·체계를 정비하여, 상위 규범과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.

표결 안내 — 본 정관 개정(안)은 부칙 제1조에 따라 당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발의되었으며,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.